##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이병진·조 국·송옥주

윤후덕 · 임호선 · 권칠승

서삼석 • 한정애 • 박지원

이상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하늘꿈·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 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 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교육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여성가족부가 보 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 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 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 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제 5항 신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를 "교육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 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교육지원) ① (생 략)	제24조(교육지원) ① (현행과 같
	<u>⇔</u> )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②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	
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③ <u>교육부장관</u>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및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	보호대상자의
호대상자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	
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
	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
	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확보
	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교육 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 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